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36
----------	-------

발의연월일 : 2021. 7. 5.

발 의 자 : 박대출 · 권명호 · 김미애
金炳旭 · 김상훈 · 김선교
김승수 · 김영식 · 김 용
김은혜 · 김정재 · 박 진
백종현 · 서일준 · 송석준
신원식 · 안병길 · 양금희
윤두현 · 윤재옥 · 윤주경
윤창현 · 윤희숙 · 이달곤
이명수 · 이양수 · 이 용
이종성 · 이주환 · 이채익
이헌승 · 전주혜 · 정진석
정찬민 · 정희용 · 조명희
지성호 · 최승재 · 최춘식
추경호 · 태영호 ·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4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개발 촉진사업’,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에도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 업체의 손실이 커지자, 시행령상 전력기금 사용처에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음.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조성하는 것이므로 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 중 탈원전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제5호의2부터 제5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

4의2.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4의3.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존을 위한 사업

4의4.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5의2.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5의3.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의4.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5의5.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5의6.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4의2.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u>
<u><신설></u>	<u>4의3.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존을 위한 사업</u>
<u><신설></u>	<u>4의4.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5의2.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u>
<u><신설></u>	<u>5의3.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u>
<u><신설></u>	<u>5의4.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u>
<u><신설></u>	<u>5의5.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u>
<u><신설></u>	<u>5의6.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u>
6. ~ 11. (생략)	6. ~ 11. (현행과 같음)

<u>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u>	<u><삭 제></u>
---	--------------------